

제394회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회의록 제 2 호

(임시회)

국 회 사 무 처

일 시 2022년3월31일(목)

장 소 문화체육관광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정청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392)
2.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정청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562)
3.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4.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658)
5.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최형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521)
6.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조명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583)
7.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8.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유정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169)
9. 독서문화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서일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438)
10. 독서문화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11.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배현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239)
12.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임오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335)
13.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14.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501)
15. 경륜·경정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13944)
16.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서일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430)
17. 중앙행정권한 및 사무 등의 지방 일괄이양을 위한 관광진흥법 등 2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14560)
18.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상정된 안건

1.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정청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392) 2
2.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정청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562) 2
3.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
4.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658) 2
5.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최형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521) 2
6.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조명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583) 2
7.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
8.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유정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169) 2
9. 독서문화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서일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438) 2
10. 독서문화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
11.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배현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239) 2
12.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임오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335) 2

13.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
14.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501)	2
15. 경륜·경정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13944)	2
16.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서일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430)	2
17. 중앙행정권한 및 사무 등의 지방 일괄이양을 위한 관광진흥법 등 2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14560)	2
18.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

(10시17분 개의)

○위원장 이채익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4회 국회(임시회) 제2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문화예술법안심사소위와 체육관광법안심사소위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18건의 문체부 및 문화재청 소관 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정청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392)
2.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정청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562)
3.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4.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658)
5.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최형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521)
6.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조명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583)
7.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8.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유정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169)
9. 독서문화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서일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438)
10. 독서문화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11.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배현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239)
12.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임오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335)
13.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14.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501)
15. 경륜·경정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13944)
16.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서일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430)

17. 중앙행정권한 및 사무 등의 지방 일괄이양을 위한 관광진흥법 등 2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14560)

18.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위원장 이채익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18항까지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18건의 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먼저 문화예술법안심사소위원회를 대표하여 박정 소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위원장 박정 문화예술법안심사소위원장 박정입니다.

우리 소위원회는 3월 30일 12건의 법률안을 심사하여 1건의 수정안과 3건의 대안을 의결하였습니다.

의결한 법률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법률입니다.

김승원·최형두·조명희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합·조정한 대안은 최근 대면 예술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공연예술계 지원과 새로운 기술에 따른 공연 관람방식의 발전을 위해 온라인 공연예술활동에 대한 국가 및 지자체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화재예방을 위해 공연장의 규모·형태·구조 등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공연장의 무대에 방화막 설치를 의무화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공연장에 대해서는 개정 규정을 소급 적용하여 이 법 시행 이후 3년 이내에 방화막을 설치하도록 명시하였습니다.

다음, 유정주 의원이 대표발의한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방송영상독립제작사의 범위를 확대하여 관리 감독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미디어환경에 탄력적으로 대응하려는 것으로 온라인동영상제공자라는 용어를 역무 중심으로 규정하고 개정 취지에 맞게 일부 체계 및 자구를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문화재청 소관 법률안입니다.

정청래 의원이 대표발의한 2건의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합·조정한 대안은 문화재기본계획 수립 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절차를 명시하고 국가지정문화재 등의 민간 소유자·관리단체가 문화재 관람료를 감면하는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감면된 관람료에 해당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채익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체육관광법안심사소위원회를 대표하여 최형두 위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위원장대리 최형두 체육관광법안심사소위원회 위원 최형두입니다.

우리 법안심사소위원회는 3월 30일 6건의 법률안을 심사하여 2건의 원안, 2건의 대안을 의결하였습니다.

의결한 법률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배현진 의원과 임오경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합·조정한 대안은 대한체육회와 대한장애인체육회의 사업에 국가대표선수촌 관리 및 국가대표선수에 대한 스포츠의·과학 훈련지원을 규정하고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의 ‘체육 과학 연구’ 사업을 ‘스포츠 정책·산업·과학 등 제반사안 연구 및 지원’ 사업으로 수정하려는 내용입니다.

아울러 법안심사소위원회는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면서 전체회의에서 여러 위원님들과 부처의 의견을 듣고 논의하자는 부대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다음, 박정 의원이 대표발의한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골프장업의 종류를 회원제, 비회원제, 대중형으로 정하고 회원제 골프장과 비회원제 골프장의 분리 운영을 규정하려는 내용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그다음, 정부가 제출한 경륜·경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선수·심판의 결격사유 중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자에는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자도 포함된다는 점을 규정하고 실형을 선고받은 자와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자를 구분하여 결격 기간에 차이를 두어 규정하려는 내용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일준 의원이 대표발의한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정부가 제출한 중앙행정 권한 및 사무 등의 지방 일괄이양을 위한 관광진흥법 등 2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을 통합·조정한 관광진흥법(대안)의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안은 종전에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등 시·도지사에게만 부여되었던 관광특구의 지정 등 사무권한을 인구 100만 이상의 대도시의 장에게도 부여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상 법률안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체육관광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채익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의견 개진 순서입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들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질의는 순서대로 전 위원님들에게 하지 않고 질의하실 위원님들의 의향에 따라서 순서대로 그렇게 제가 질의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김승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승수 위원 문화재보호법 관련해 가지고 문화재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국가지정문화재 소유자 또는 관리단체가 문화재관람료를 감면하는 경우에 대통령령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새롭게 규정을 넣는 그런 개정안입니다. 그러면 이게 부담 주체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인데 어떤 경우에는 국가가 하고 어떤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가 하고 거기에 대한 기준이 서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문화재청장 김현모 지금 개정이 되는 49조는 국가지정문화재에 대한 규정인데 문화재보호법 74조는 국가문화재에 대한 규정을 지방문화재가 준용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라고 명시를 한 것은 74조에 지자체가 감면할 수 있는 근거를 남기기 위해서 필요한 조문입니다.

○김승수 위원 그러면 청장님 말씀대로 같으면 국가지정문화재 같으면 당연히 국가가 부담 주체

가 되어야 되겠네요, 그렇지요?

○문화재청장 김현모 예, 그렇습니다.

○김승수 위원 그리고 감면하는 여러 가지 대상들이 있는데 국가유공자에 대한 감면이 있을 수 있고 또 군인·경찰에 대한 감면이 있을 수 있고 또 연령에 따른 감면, 경로우대 감면, 경우에 따라서는 지역주민에 대한 감면 이런 것들이 있다는 말이지요. 각각의 감면에 대한 또 다른 법령의 근거 조항에 따라서 감면되는 경우가 있고 그게 아닌 순수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감면 대상이 있을 수가 있는데 그런 경우에 대한 구분은 어떻게 합니까?

○문화재청장 김현모 지금 이 조항은 관람료에 한정해서……

○김승수 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관람료 감면 규정이 국가유공자 또 경로우대, 각각의 이런 분들에게 대해서는 감면할 수 있다, 다른 법령에 근거 조항이 있을 수가 있다는 거지요. 그러면 꼭 국가 지정문화재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른 데 유사한 그런 감면하는 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보면?

○문화재청장 김현모 예, 그렇습니다.

○김승수 위원 그런 부분들하고 형평성을 맞춰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런 데 대해서는 어떻게 판단할 건가 여쭙보는 겁니다.

○문화재청장 김현모 만약 다른 법령에 의해서 감면이 된다면 그 법령에 따르면 될 것이고요. 지금 여기서 저희가 예정하는 건 아마 사찰이 아닌 다른 시설들이 해당될 수도 있는데 이것은 앞으로 종합적으로 감면의 필요성이 제기될 때 개별적으로 판단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김승수 위원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특히 국가 지정문화재를 많이 보유하고 있는 사찰이라든지 이런 데도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고 여러 가지 취지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을 하고 우리 당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합리적으로 제도적인 개선 방안을 강구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한 바 있습니다. 관련해서 이 부분도 대통령령으로 감면할 수 있는 구체적인 기준 이런 것들을 면밀히 검토해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재청장 김현모 예, 시행령에서 구체적인 지원 기준이나 절차를 마련할 때 위원님들과 충분히 협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채익 또 위원님 없습니까?

그러면 위원장도 문화재청장께 하나 묻겠습니다.

방금 존경하는 김승수 위원님도 말씀을 했습니다. 다마는 국가지정문화재 등의 민간 소유자, 관리 단체가 사실상 관람료 징수에 여러 가지 어려움 또 그것 갖고 관리하는 데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이 문제가 불교계를 비롯해서 문제가 됐는데, 방금 문화재청장께서 ‘시행령에 정확하게 담겠다’ 이런 말씀을 했지요?

○문화재청장 김현모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채익 그러니까 ‘국가 또는 지방자치 단체가 지원할 수 있다’고 이렇게 선언적으로 해 놓으면 국가도 또 지금 지방자치단체 같은 경우는 굉장히 열악한 지방재정이기 때문에 이 법이 서로 또 다른 갈등의 원인이 될 수 있다 하는 부분이 염려가 되어서 제가 묻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시행령에 어떻게 명확하게 할 것인지?

특히 지금 지방자치단체 같은 경우는 요즘 지방소멸 위기에 처할 정도로, 자체 재정으로 공무원 인건비도 제대로 마련하기 어려운 실정에 이러한 부분까지 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도록 자꾸 국회가 이런 식으로 갈 때 지방자치단체는 한마디로 죽을 지경일 것이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명확하게 ‘국가가 지원한다’든지 이렇게 구체적으로 해야지 이것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이렇게 편의적으로 했을 때 파생되는 문제도 상당히 있을 것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 문화재청장이나 정부의 입장을 한번 얘기해 보세요.

○문화재청장 김현모 지금 시도의 경우에는 오늘 의결해 주신다면 49조에 의해서 근거가 마련되는 것이고 아마 시도에서 감면하고 지원하기 위해서는 추가로 조례를 제정을 해야 됩니다. 아마 거기에서도 시도별로 상황에 맞게 정리가 될 것이고, 사찰에 대한 지원은 시행령에 담아야 되지만 아직도 불교계하고 좀 더 충분한 소통 그 과정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또 재정 당국에서도 여러 가지 의견을 제시할 것이고요. 거기에 맞춰서 우려하시지 않게 잘 정리를 하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채익 또 다른 위원님들……

김승수 위원님.

○김승수 위원 문체부장관님!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황희 예.

○김승수 위원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에 보면

국가대표선수 스포츠의·과학 훈련 지원, 대한체육회의 기능을 신설하는 게 들어가 있고 기존 국민체육진흥공단의 체육과학의 연구는 ‘스포츠 정책·산업·과학 등을 위한 제반사업 연구 및 지원’ 이런 식으로 구체화시켜 놓았는데, 그러면 대한체육회에 신설되는 스포츠의·과학 훈련 지원은 누가 어떻게 담당을 하게 되는 건가요? 거기에 대한 계획이 서 있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황희 그 부분에 대해서 문체부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존경하는 배현진 의원님, 임오경 의원님이 법안 발의한 내용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아가는 부분입니다. 그동안 국가대표선수들에 대해서 과학적인 지원체계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던 부분들에 대해서는 당연히 취지에 공감하고, 더군다나 각종 올림픽에서 국가대표선수들에 대한 과학적 지원이 매우 효과를 보고 있다라는 것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대표선수들한테 체계적인 지원이 안 되고 있고요. 또 아울러서 존경하는 전용기 위원님이 제안하신 장애인체육에 대해서도 스포츠과학 분야가 지원이 안 되고 있다.

그다음에 문체부에서 고민하고 있는 결국은 성적 지상주의를 탈피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충족되어야 되는데 그중의 하나가 학교 현장, 특히 중·고등학교 엘리트 체육 현장에서 스포츠과학화가 지원되어야 되는데 이게 거의 제로에 가까울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한꺼번에 다 해결되어야 되는데요. 현재 스포츠정책과 학원이 이런 것을 연구개발하고 지원하는 사업을 하고 있는데 예산이 200억입니다. 아마 올해 한 30억 정도 올라서 230억인데 이것 가지고는 턱없이 부족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이것을 기능을 분리하기보다는 하나로 단일화해서 집중력을 발휘할 때인데요.

다만 지금 현재 공단에 있는 스포츠정책과학원을 스포츠기본법이 통과됐기 때문에 이것을 문체부가 법정 법인화하는 법안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의 대표선수단의 지원체계는 그 가운데서도 대한체육회와 상의해서 국가대표선수들에 대한 지금 현재 개선되지 않은 부분들에 대해서 스포츠과학이 충분하게 지원될 수 있는 체계를 저희가 4월 중에 마련해서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존경하는 임오경 의원님, 배현진 의원님이 입법 발의하신 그런 취지를 충분히 담고 그

다음에 스포츠 정책, 연구개발과 지원이 일단은 단일화되고 이것이 또 산업으로 연계되는 효과까지 충분히 볼 수 있도록 그 안을 저희가 마련해서 4월 중에 보고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법안에 대해서는 문체부 의견을 참고하셔서 일단은 좀 보류를 해 주시면 그 대안을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고 싶습니다.

○위원장 이채익 박정 위원님.

○박정 위원 장관님 말씀은 잘 들었는데, 우리가 지향하는 바가 성적 지상주의가 아니고 온 국민이 생활체육을 비롯해서 다 즐길 수 있게 하는 건 맞는데 실질적으로 국가대표들이 대회에 출전하면서 그냥 가서 즐기는 형태는 아닌 것 아니겠어요? 적게는 몇 년씩, 아니면 4년씩 준비를 해서 올림픽이라든지 각종 대회에 출전을 하는데 이때 대회에서 본인들 스스로가 전문적인 지원을 과학이나 의학 쪽에서 못 받고 있다고 생각하면 그건 정부 측 문제나 체육회의 문제겠지요. 그래서 성적 지상주의라는 것이 다 일반화되는 건 아니어도……

국가대표들은 당연히 메달을 따기 위해서 더 노력하는 건 당연한 것이고요. 그러려면 지원이 필요한데 지금 예산이 자꾸 적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동안 문체부가 책임을 방기한 것 아닌가. 가뜰서 예산 적은 것, 우리가 1.23%에 대해서 계속 더 늘려야 된다는 얘기를 국회에서 수차례 했고 그래서 올렸지만 결국은 그것이 잘 통과되지 않음으로써 전체 예산이 적으니까 이런 것들에 대한 지원이 200억밖에 안 된다 이런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더 찾아서, 다음에는 예산의 근거를 확실하게 만들어서…… 재정 당국에서 무조건 반대할 수는 없는 것 아니겠어요, 다 근거, 논리적으로 맞고 그게 합당하다면? 그런 것들을 더 노력을 해서 찾아내셔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동안이라도 이것을, 4월에 보고를 하시고 법을 만들기 전이라도 국가대표 또 장애인체육회 그쪽의 의견을 충분히 들으시고 거기에 지원을 할 수 있는 것들, 그동안의 미비한 것들……

국감에서 계속 위원님들이, 특히 임오경 위원님이 많이 말씀하셨는데 그게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이런 법에 담아서 빨리 해결하려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런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시고 대안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황희 예, 위원님,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해주신 부분에 대해서 미진하고 미흡하고 또 예산 대책도 마련 못 하고 이 부분이 맞습니다.

다만 간곡하게 호소드리고 싶은 것은 그러한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체계적으로 설계하는 데 있어서 출발을 제대로 할 수 있는…… 물론 이 개선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 법안을 내시고 하겠지만 이것 포함해서 전체적인 방향성이 흐트러질까 그게 좀 우려스럽습니다. 그래서 한 번 더 문체부한테 기회를 주시면 이런 부분까지 해서 방향 자체 설계를 제대로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채익 존경하는 박정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제가 다른 위원님들 말씀에 혹시 장애가 될 것 같은 부분도 있지만 위원장으로서 정부에 촉구하고 싶은 것은 우리 의원님들의 법안을 위원장은 소중히 또 잘 판단해서 입법으로 성취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것이 위원장의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어제오늘 부대의견 또 아니면 충분히 논의를 한다고 했지만 통과된 법안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법안이 제출될 때 정부는 깊이 숙고하고 또 위원님께도 보고드리고 정부의 입장을 충분히 해서 그렇게 대응을 해 주셔야지 이렇게 법안이 올라온 부분을 정부는 좀 보류를 해 달라 이렇게 하면 위원장도 또 우리 위원회의 권위도 참 모양이 안 좋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야를 떠나서 앞으로 우리 법안은 상임위 중심주의로 해서 법안을 치열하게 토론하고 우리 법안이 법사위에 가서는 절대 논쟁이 되지 않고 통과가 되어야지 우리 법안이 법안소위에 가서 정부가 또 다른 얘기를 하면 우리 위원회의 위상이 말이 아니다 하는 부분을 정말 제가 정부에 경고를 하고 싶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각별하게 앞으로 이런 일이 없기를 제가 강력히 정부에 말씀을드리고자 하는 거예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황희 위원장님, 정말 반성하고 주의하겠습니다.

이 법안에 대해서는 당연히 취지에 공감하고 문체부가, 정부가 개선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수차례 한 2년 동안 지적을 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잘못이 당연히 문체부에 있습니다.

그런데 스포츠과학이라는 것이 지금 현재 적은 예산으로 집중력을 발휘해야 될 시기고 국가대표

선수단은 당연히 물론이고 학교 교육 현장에도 같이 적용되어야 되는 부분이라서요 이 부분에 있어서 방향을 좀 제대로 설계할 기회를 한 번 더 주시면 위원님들이 충분히 공감할 수 있는 안을 마련하고, 그때 가서 정말 미진하면 진짜 의회에서 논의를 지금처럼 해 주시면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겠습니다.

○위원장 이채익 존경하는 최형두 위원님.

○최형두 위원 대한민국 민주화·산업화 요람, 대한민국 지중해 도시 마산합포 최형두입니다.

어제 제가 법안심사소위를 하면서 정부의 고심도 이해하고 하는데, 제가 최근에 법안심사를 하고 보면 정부가 정말 주권자이자 정책의 수요자인 국민을 위해서 또 정책의 대상자를 위해서 봉사하도록 되어 있는 기구인지 아니면 기존에 만들어진 틀대로 국민과 정책 수요자가 따라오라고 그냥 강제로 옷을 입히는 조직인지 참 의아할 때가 많습니다. 물론 정부도 정해진 법과 규정과 제도에 따라서 해야만이 안정성이 유지되고 또 오남용도 피할 수가 있겠는데, 예컨대 이런 겁니다. 내가 보니까 요즘 AI 이렇게 나오면서……

제가 어제 법안심사에서 고심을 많이 했는데 차관님도 말씀하시고 해서, 결정적으로 제가 어제 법안을 통과시키겠다고 결심한 까닭은 선수들이 지금 선수들의 경기력 향상과 체력 증진을 위해서, 선수들이야 최고의 체력을 가진 분들이니까 이걸 위해서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스포츠과학원을 만들어서 체력 측정을 하는데 스포츠과학원은 일정이 있으니까 경기 중인 선수들을 불러서 측정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수들이 경기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일정을 주지 않고 스포츠과학원의 수요대로 경기 있더라도 나와서 측정받아야 이렇게 한다는 거지요.

그러면 그게 과거에는 그럴 수밖에 없었다, 기 자체에 한계가 있었다고 한다면, 최근에 ETRI가 국방부의 용역을 받아서 국군 체력 향상을 위해서 제일 스포츠 기록이 잘 되어 있는 선수촌을 찾았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어떻게 했냐 그러면 그냥 AI·빅데이터 방식으로 했다는 거예요. 선수들의 만족도가 굉장히 높았다고 합니다. 그런 현실의 변화에 빨리 따라가야 되는데 지금 이게 법 개정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권한이나 업무가 스포츠과학원 권한이나 선수촌 권한이나 체육회 권한이나 막 이렇게 되어 버리니까 이게 굉장히 복잡해지고 어려워졌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그것이 어디에 있더라도 우리 스포츠 경기력을 높일 수 있는 체력 향상 또 과학적 측정 또 나아가서 국군과 국민 전체의 체력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는 이런 방향으로 원 플랫폼으로 진행되어야 하는데, 그래서 최근에 새 정부가 원 플랫폼 정부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제가 예산심사를 해 보면서 너무 많은 항목들이 전부 예산이 부처별로 나뉘어 있습니다. 저는 사실은 이번에 코로나 예산 추정 같은 경우도 부처 이렇게 하지 않고 그것 잘 조정하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느낀 게 지난 예산심사에서 느꼈거든요.

그래서 그것처럼 이런 문제도 원 플랫폼으로 한다면 국민들은 이 플랫폼으로, 예컨대 네이버라든가 다음이라든가 이런 포털들은 국민들을 위한 전체적으로, 거기에는 부처가 없지 않습니까? 우리는 부처가 있어 가지고 이 부처가 국민들이 받아야 될 서비스라든가 이런 혜택을 오히려 가로막는 장벽이 되고 있다는 하나의 사례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문체부의 또는 스포츠과학원의 그동안 노력을 폼뻐하는 것이 아니라 이게 따라가는 새로운 기술의 진전 또 정말 필요로 하는 국민을 위한 혜택 또 국민을 위한 봉사 이런 점과 상당히 괴리되어 있다는 점을 많이 느끼는 그런 법안심사였습니다.

참고해 주십시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황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채익 김승원 위원님.

○정청래 위원 위원장님!

○김승원 위원 저는 다른 취지의 질문인데, 혹시 연속된 것이라면 양보할 수도 있습니다만……

제가 먼저 할까요?

장관님과 문화재청장님 아마 공통적으로 관련되는 질문일 것 같습니다.

오늘 문화재 기본법이 통과되었고 문화재 기본계획 수립 시 관계 중앙행정기관장과의 협의를 거치도록 바뀌었는데요.

지금 청와대가 5월 10일부터 국민에게 개방되고 국민의 품으로 돌려드린다는 당선인과 인수위의 발표가 있었는데 그러면 이 청와대 당장 누가 관리하게 되는 거지요? 지금 청와대가 노태우 대통령 시절에 건축된 영빈관도 있고요. 그 전에 이승만 대통령 때부터 사용했던 경무관이라고 하

지요, 경무대, 그 건물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경내 안에는 아마 바위를 조각해서 만든 부처상도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것에 대한 협의라든가 혹은 관리 진행에 대해서 절차가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황희 아마 관리주체에 대해서는 인수위하고 협의해야 될 사항인 것 같아요. 현재로서는 청와대 이전이 확정되는 단계다 보니까 아마 관리주체는 당연히 그 뒤에 결정될 것 같고, 다만 위원님께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콘텐츠 관련해서, 하드웨어 말고 콘텐츠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문체부가 주변에 있는 다양한 여러 콘텐츠와 같이 연계해서 할 수 있는 방안들에 대해서 고민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승원 위원 문화재청장님은 어떠세요? 그 안에 문화재가 몇 개가 있는지 그런 등등에 대한 조사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나요?

○문화재청장 김현모 저희가 지금 파악하고 있는 자료들, 특히 경복궁 후원으로서의 역사성 이런 측면들을 자료를 충분히 제시했습니다.

○김승원 위원 거기에는 칠궁이라고 해서 왕을 낳은 후궁의 사당도 있지요?

○문화재청장 김현모 예, 그렇습니다.

○김승원 위원 사실 다 연계가 되는 것들인데……

○문화재청장 김현모 그래서 문화재청 입장에서는 청와대의 어떤 시설물은 좀 더 검토가 필요하겠지만 청와대 전역에 대한 관리는 문화재청이 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김승원 위원 그런 의견을 제시했습니까? 제시했어요?

○문화재청장 김현모 예.

○김승원 위원 예, 알겠습니다.

지금 이게 너무 급하게 진행이 돼서, 이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은 2000억 경제효과가 있다라는 발표를 자꾸 내고 전경련은 또 청와대 이전으로 국내총생산이 3조 3000억이 늘어날 것이다 이런 아주 근거가 막약한 발표를 계속 하고 있는데, 왜 그런가 봤더니 청계천 방문이 1740만 명이니까 청와대를 1670만 명이 방문할 것이다, 우리나라 인구 3분의 1이 청와대를 방문한다고 그걸 추산하에 지금 그런 경제적인 효과를 자꾸 강조하고 있는데 우리는 문체부 아니겠습니까?

사람이 많이 방문하면 지금 사실 청와대는 3분

의 1이 제 기억으로는 산야, 임야인데 1600만 명이 들어갈 만한 사이즈가 면적이 안 되고 관람, 그런 시사할 만한 것도 그렇게 많지가 않아서 지금 이런 경제적 효과를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 문체부가 정확히 반박을 하고 거기에 있는 문화재라든가 또 우리나라 근대역사시설에 대해서 확실하게 조사를 해서 국민들에게 이것은 예컨대 옮겨진다면 문화재로서 어떤 가치가 있고 우리나라의 근대역사에 어떤 위치를 점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확실하게 얘기를 해야 자꾸 경제적 효과가 어떻고 이런 쓸데없는 것이 전경련에서도 발표되고, 이게 사실은 신정경유착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문체부가, 문화재청이 정확하게 브레이크를 걸고 얘기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습니까?

○위원장 이채익 존경하는 김승원 위원님!

○김승원 위원 예.

○위원장 이채익 지금은 법안심사와 관련한 의견 개진 시간을 좀 하시고 또 위원님들 여기 지금 다 각자 일정이 있으니까 의견 개진하고 또 다른 일정을 소화할 위원님이 계시기 때문에 위원장 생각은 가능한 한 법안심사와 관련한 의견 개진을 먼저 하고 이 의결이 끝나면 그 뒤에 방금 김승원 위원님께서 하시는 이런 정책 의견 제시도 장관께서 나왔기 때문에 기회를 충분히 드리겠습니다.

그것 좀 양해해서 가능한 한 법안심사와 관련해서 의견을 개진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승원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정청래 위원 위원장님, 그러면 저도 의결 끝나고 발언할게요.

○위원장 이채익 예.

위원님들, 일단 오늘 상정한 법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황희 위원장님, 아까 애기한 체육진흥법은 어떻게……

○위원장 이채익 예, 알았습니다.

그래서 의결을 하겠습니다.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위원님들께서도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하다 또 일부 위원님들의 의견과 또 정부 측도 4월 중으로 보고를 국

회에 드리고 추후 입법으로 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이 있어서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서 전체회의에 계속 계류토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의견이 어떻습니까?

○임오경 위원 의사진행발언……

○위원장 이채익 임오경 위원님.

○임오경 위원 이걸 의사진행발언이라고 해야 되는지……

본 의원과 배현진 의원이 발의한 이 법안의 핵심은요 제가 꼭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정책과학원 밀착지원팀을 대한체육회로 이관하는 것이 아니라 대한체육회가 국가대표선수들의 과학적 훈련 지원을 책임지고 수행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자는 데 의미가 있고요.

또 시대적으로 요구하는 게 앞서 존경하는 최형두 위원님께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셨는데 과학 지원은 지금은 필수입니다. 권고도 아니라 지금은 필수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2년여에 걸쳐서 국정감사에서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세계에서 가장 빠른 우사인 볼트 선수가 척추측만증의 장애를 앓고 있지만 이 의·과학을 통해서 세계에서 가장 빠른 선수가 되었다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장관님, 2021년 9월에 스포츠윤리센터가 문을 열었습니다. 그러면 스포츠윤리센터가 문을 열었으면 우리 체육계 그리고 모든 국민들은 스포츠하고 관련된 것은 스포츠윤리센터에다가 민원을 넣으면 되는 겁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황희 민원은 창구가 여러 군데에서 받는 게 중요하고요.

○임오경 위원 그렇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황희 기술개발하고는 조금……

○임오경 위원 그래서 그 밑으로는, 컨트롤타워가 제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던 게 대한체육회에 스포츠공정위원회가 있고 각 종목단체에 공정위원회가 있고 시·도체육회도 스포츠공정위원회가 다 있습니다.

절차를 밟아서 올라와야 되는 것처럼, 그렇다면 지금 스포츠정책과학원은 밑에서 하단부터 스포츠 의·과학이 연결되어야지만 가장, 스포츠정책과학원은 위에서 모든 컨트롤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대한체육회에는, 지금 저희가 국민체력센터가 있으면 17개 시·도체육회에서는 지금

11개 플러스 2개를 신설하려고 해서 13개가 올해 진행될 거라고 제가 알고 있어요. 그렇다면 국가대표선수는 진천과 지금 장애인체육회에서 운영하는 이천선수촌 그리고 내년에 평창에 제2의 선수촌 하나가 또 개설되고요.

그렇게 된다고 하면 제가 원하는 것은 진천선수촌, 이천선수촌에 지금 다 알고 계시겠지만 식단·영양은 대한체육회에서 하고요, 과학적 트레이닝은 정책과학원, 외부 전문가가 하고 있고요. 기술·영상은 대한체육회, 외부 전문가, 부상 예방은 대한체육회, 집중 진료·치료·재활은 대한체육회 및 외부 전문가, 심리는 대한체육회, 정책과학원, 외부 전문가, 이게 다 분리가 되어 있다는 거지요. 진천선수촌이나 이천선수촌 안에 이 모든 의·과학이 컨트롤타워가 그 안에서 이루어져야 된다는 간단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은 이렇게 너무나 분리가 되어서 이 모든 피해를 고스란히 선수들이 다 보고 있다는 겁니다.

저희가 내년에는 아시안게임이 있고 그다음에 2024년에는 평창 청소년동계올림픽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선수들에게 왜 이러한 피해를 줘야 되는지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지금 대한체육회는 어디서 컨트롤합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황희 대한체육회는 예산을 줘서 독립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임오경 위원 문체부에서 운영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황희 문체부에서 컨트롤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임오경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문체부와 대한체육회의 관계를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선수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데 이 피해를 선수들이 보지 않게 현장에 직접적으로 의·과학을 지원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그러한 취지의 법안이라는 것을 저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계속해서 지금 논의가 되어서 이것 다음으로 미루자고 하는데 그러면 다음 회의까지 이 대안에 대해서 결론이 안 나오면, 다음 회의까지도 대안에 대해서 결론이……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황희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개선안이 그때도 안 나오면 위원님들 논의하시는 대로 진행하시면 될 것 같고요.

위원님, 과학기술이 지금, 스포츠과학이 그렇게 고도화되어 있는 단계가 아닙니다. 현재로는 기

술개발과 이런 부분들이 너무나 중요하고요, 이쪽의 연구개발이 초집중되어야 될 그런 상황이고요. 다른 도서관이라든가 박물관 농듯이 어디 어디에 들어간다고 해서 지금 실현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가장 경기력이 뛰어난 국가대표선수단들, 이 스포츠과학은 현장과 연구개발의 연계성이 가장 중요하니까 국가대표선수단들 중심으로 끊임없이 기술개발하고 연구개발하고 고도화시키는 것들을 그 체계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부분, 걱정하시는 부분들이 같이 해소될 수 있도록…… 다만 스포츠정책과학에 있어서 현재 가지고 있는 예산을 가지고 기술을 고도화시키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집중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임오경 위원 제가 좀 아쉬운 부분이 있다면 이 법안이 이렇게 지금 정부에서 또 계획하고 있는 게 플랜이 있다라고 하면 사전에 법안 발의한 의원실에 찾아오셔서 한 번 정도는 설명이 있었어야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좀 아쉬운 부분이 있고요.

지금 장관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더 이상 문체부의 입장을 피력하지 않는다고 확실하게 여기서 답변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다음 회의까지 대안이 안 나온다면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황희 개선안이 안 나오면 당연히 위원님들 안이 그다음 개선안이 되겠지요. 그것은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임오경 위원 다음 회의까지 대안이 결론적으로 나오지 않는다면……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황희 예, 4월 중에……

○임오경 위원 예.

○위원장 이채익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1항부터 제13항까지 3건의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하다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고려하여 보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서 전체회의에 계속 계류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축조심사와 비용추계 생략을 위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의결할 18건의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는 소위원회에서 조문별로 축조심사를 심도 있게 진

행하였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국회법 제66조제3항과 제79조의2제2항에 따라 오늘 회의에서 의결한 법률안 중 예산 또는 기금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수정안 또는 대안에 대해 예산정책처 비용추계서 첨부를 생략하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및 제2항, 2건의 법률안은 법안심사소위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의사일정 제3항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부터 제6항까지 3건의 법률안은 법안심사소위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의사일정 제7항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8항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법안심사소위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법안소위 수정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9항은 법안심사소위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의사일정 제10항 독서문화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4항 및 제15항, 2건의 법률안은 법안심사소위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6항 및 제17항, 2건의 법률

안은 법안심사소위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의사일정 제18항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된 법률안의 체계와 자구 정리에 대해서는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법률안 의결에 대한 정부 측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먼저 황희 문화체육관광부장관님 나오셔서 인사해 주십시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황희 존경하는 이채익 위원장님, 위원님 여러분!

오늘 경륜·경정법 등 법률개정안을 의결해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법률안 내용을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신 법안심사소위원회 박정 위원장님과 배현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소위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와 문화체육관광부 직원들은 법률안 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제시해 주신 의견들을 적극 반영하고 법안들의 입법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향후 집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채익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현모 문화재청장님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재청장 김현모 존경하는 이채익 위원장님, 위원님 여러분!

문화재청 소관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2개 법안을 심의 의결해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문화예술법안소위 박정 위원장님과 소위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법안을 심의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법률안 심의 과정에서 제시해 주신 의견들을 앞으로 정책에 적극 반영하고 소중한 문화유산이 온전히 보호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채익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법률안 의결 절차를 모두 마쳤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말하였습니다마는 정책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청래 위원님.

○정청래 위원 문화재청장님께 여쭙겠습니다.

‘A Nation that forgets its past has no future—과거를 잊은 민족에게는 미래는 없다’라는 말, 동의하시지요?

○문화재청장 김현모 예.

○정청래 위원 지금 보도에 의하면 일본은 독도는 자기네 땅이다, 한국이 불법 점유하고 있다, 그리고 위안부는 마치 자발적으로 온 것처럼 묘사하는 그야말로 역사 왜곡, 교과서 왜곡의 결정판을 보여 주고 있습니다.

해당 직접 부서는 아니지만 문화재청장으로서,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분노하시지요?

○문화재청장 김현모 예, 그렇습니다.

○정청래 위원 규탄하시지요?

○문화재청장 김현모 예.

○정청래 위원 저도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 규탄합니다. 천인공노할 일이지요.

문체부장관님도 같은 생각이지 않겠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황희 예, 그렇습니다.

○정청래 위원 그런데 기사에 이런 제목이 있어요. ‘일 역사 왜곡 교과서, 인수위 측 윤석열 입장 표명 부적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당선인이 아니라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분노하면 당연히 대통령도, 대통령 당선인도 분노하고 규탄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문체부장관님께는 곤란하실 테니까 질문을 하지 않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매우 부적절한 역사 인식을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하고 있다,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규탄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만 이런 게 아니라 현 정부 문화재청에서도 이런 비슷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지난 국정감사 때……

창덕궁과 종묘를 가로지르는 민족의 정기를 꿇었던 그 길을 지금 복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종묘사직을 보존하소서’, 그 종묘. 사직은 사직공원에 있는 토와 곡식의 신, 종묘는 우리 왕들의 신의를 모셔놓은 데. 그런데 거기의 그것을 꿇어놓은 길을 지금도 일본 연호를 사용하고 있으니, 이것을 그렇게 사용하고 있다, 적절히 바꿔라라고 제가 지난 국정감사 때 지적한 것 기억나시지요?

○문화재청장 김현모 예.

○정청래 위원 그러면 바꾸면 되잖아요.

(영상자료를 보며)

영어판에는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 분명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일제 식민시대라고 쓰여 있어요, ‘Japanese Colonial Period’.

그런데 이것을 바꾸라니까 문화재 자문위원들이 뭐라고 회의를 했냐, 기록을 보고 제가 놀라자빠졌습니다. 바꿀 필요가 없다, 일본 연호는 조선시대의 관례에 따른 것으로 민족말살 정책과는 관련이 없다.

조선시대 연호를 일본 왕 연호로 표현했습니까, 문화재청장님? 태조 몇 년, 태종 몇 년, 영조 몇 년 이렇게 다 표현했지 않았어요?

그래서 여기에 새겨져 있는 것, 일본 왕 표현한 것 있잖아요. 이것을 제가 고치라고 했는데, ‘쇼와 8년 3월 개축’ 일왕 연호잖아요, 이것. 그랬더니 문화재 자문위원이라는 사람이 일본 연호를 따랐던 것은 조선시대의 관례라는……

이분 일본인 출신입니까?

청장님, 이 보고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문화재청장 김현모 제가 다시 한번 더 확인을 해야 되겠지만……

○정청래 위원 화면 좀 띄워 보세요, 이 자문위원의 발언.

보이십니까?

○문화재청장 김현모 제가 확인을 다시 하겠습니다.

○정청래 위원 아니, 보이세요, 안 보이세요?

○문화재청장 김현모 보고 있습니다.

○정청래 위원 발언이 잘됐어요, 잘못됐어요?

○문화재청장 김현모 옳지 않은 표현으로 생각이 됩니다.

○정청래 위원 이런 분한테 무슨 자문을 받으니까?

이것 즉시 어떻게 개선할 건지 조사해서 저한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재청장 김현모 예, 알겠습니다.

○정청래 위원 우리 민족의 역사는 우리가 소중히 가꾸어야지요. 일본의 저런 역사 왜곡 교과서 침탈, 영토 침탈 이런 것들을 우리가 막아내야지요.

1분만 더 주세요.

그래서 일본은 호시탐탐 신군국주의를 꿈꾸고 일본 군대를 부활시키려고 평화헌법을 개정하려고, 없애려고 지금 아베 정권 거의 극도로 치달아왔지 않습니까? 곳곳에 이런 일들이 벌어져요, 우

리 내부에서도. 검은 머리 서양인만 있는 게 아니라 한국의 얼굴을 한 일본인도 많아요. 적어도 국가 정책을 함에 있어서 그리고 문화재청, 문체부 안에는 이런 일들이 발본색원되어야 되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문화재청장 김현모 예, 그렇습니다.

○정청래 위원 제가 처음에는 교육 일을 했어요. 식민지 역사 잔재를 청산하자, 중고등학교에 있는 일본식 표현 다 바꾸자, 목표도 바꾸자 이런 운동을 했었습니다.

문체부, 이것 정확하게 조사해서 보고해 주세요.

○문화재청장 김현모 예, 정리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채익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황희 장관, 김현모 청장님 등 소관 부처 관계자 여러분, 보좌진과 수석전문위원 등 국회 관계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9분 산회)

○출석 위원(14인)

김 승 수	김 승 원	김 예 지	김 의 겸
박 정	유 정 주	윤 상 현	이 병 훈
이 상 현	이 채 익	임 오 경	전 용 기
정 청 래	최 형 두		

○청가 위원(1인)

이 용

○출석 전문위원 및 입법심의관

수 석 전 문 위 원	이 상 현
전 문 위 원	천 우 정

○정부측 및 기타 참석자

문화체육관광부

장	관	황	희
제 1 차 관	김	현	환
제 2 차 관	오	영	우
기획조정실장	김	영	수
문화예술정책실장	박	정	렬
체육국장	유	병	채
관광정책국장	김	장	호
정책기획관	박	종	택

문화재청

청 장
기 획 조 정 관

김 현 모
안 형 순